

# 산업안전 · 보건관리규정

제정 2017.11.17. 규정 제24호

개정 2021.8.10. 규정 제93호

개정 2022.7.20. 규정 제125호

개정 2023.4.12. 규정 제145호

개정 2023.12.21. 규정 제161호

개정 2024.4.19. 규정 제175호

개정 2025.12.29. 규정 제208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안전 ·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유지 및 증진시키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모든 임 · 직원 및 공단의 사업장 방문객 및 출입자, 위탁업체의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 8. 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19.>

1. “산업재해”라 함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1.>
3.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삭제 <2024. 4. 19.>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건강진단”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말한다.
7.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이사장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공단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인력·관리 면에서 안전·

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5조(사고예방책임 및 의무)** 공단은 사업장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 임직원이 공동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2.>

## 제2장 안전·보건관리의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21.>

**제7조(기본조직)** ① 이사장은 공단의 직제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갖는다.

② 이사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관리를 지휘 총괄한다.

③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총괄하는 안전관리부를 말한다. <신설 2025. 12. 29.>

④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장별 업무분장과 관련된 기본 안전보건관리를 관리한다. <개정 2022. 7. 20., 2024. 4. 19., 2025. 12. 29.>

⑤ 각 사업장별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직원은 해당 작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8. 10., 2025. 12. 29.>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단의 모든 사업장

을 총괄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8. 10., 2023. 4. 12.>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지휘·감독 <개정 2021. 8. 10.>

**제9조(관리감독자)** ① 공단은 사업장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10조(안전관리자)** ① 공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1. 8. 1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하며 시행령 제18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8. 10.>

③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전보 발령할 수 없다. <신설 2021. 8. 10., 2023. 4. 12.>

**제11조(보건관리자)** ① 공단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하도록 하

기 위해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1. 8. 10.>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하며 시행령 제22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8. 10.>

③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전보 발령할 수 없다. <신설 2021. 8. 10., 2023. 4. 12.>

**제12조(산업보건역)** ①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역을 두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역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역은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하며 시행령 제31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8. 10.>

**제13조(작업지휘자 지정)**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게 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3.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

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 4. 중량물의 취급작업

② 제1항제1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2.>

[본조신설 2021. 8. 10.]

**제14조(전기안전관리자)** ① 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대행기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4. 12.>

[본조신설 2021. 8. 10.]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① 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대행기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4. 12.>

[본조신설 2021. 8. 10.]

**제16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제17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제1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① 공단은 안전관리 운영에 노사가 참여하여 안전보건문제를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1. 8. 10., 개정 2023. 4. 12., 2024. 4. 19.>

1. 사용자 대표 1명
  2. 안전관리자(대행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공단 담당자), 보건관리자(대행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공단 담당자) 각 1명
  3. 사용자 대표가 지명하는 7명 이내
  4. 근로자 대표 1명
  5.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7명 이내
  6. 간사 : 사용자 측 위원 1인
  7. 위원의 변동이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노사 쌍방에 서면 통보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개정 2023. 4. 12.>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

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게시판에 게시, 사보에 게재, 자체 정례조회시 집합교육 등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⑤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사장,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직원 중에서 1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중요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2.>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신설 2021. 8. 10.>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지 1의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3.12.21.>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상정 안건 내용

⑧ 그 밖에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1. 8. 10.> <제13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7조에서 이동 2023.12.21..>

**제19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① 공단 내 모든 임원 및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 제3장 안전보건 교육

**제20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공단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관계법령에 따라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다. <개정 2022. 7. 20., 2023. 4. 12.>

**제21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공단은 직원의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업무 개시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은 제20조제2항과 같다. [본조신설 202

1. 8. 10.]

- 제22조(정기교육)** ① 각 사업소에서 모든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소의 실정에 따라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외 종사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 ② 정기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다. <개정 2022. 7. 20., 2023. 4. 12.>

- 제23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각 사업소에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게 되는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다. <개정 2023. 4. 12.>

[본조신설 2021. 8. 10.]

- 제24조(관리감독자 정기교육)** ① 공단은 관리감독자의 직무 수행 시 필요한 교육을 관계법령에 따라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1의2에 따른다. <개정 2022. 7. 20., 2023. 4. 12., 2024. 4. 19.>

- 제25조(직무교육)** 공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4. 19.>

[본조신설 2021. 8. 10.]

**제26조(교육강사)** 공단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강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지정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10.]

## 제4장 안전 관리

**제27조(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①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장은 매년 12월 중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9.>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사업장에 통보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제15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27조의2(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공단은 관리하는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공단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9.>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22. 7. 20.]

**제28조(안전보건진단)** ① 공단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았을 경우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의거하여 작성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16조에서 이동 2021. 8. 10.> <개정 2023. 4. 12.>

**제29조(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의한 기계·기구로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할 수 없으며, 대상기계·기구를 구입 사용 시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방호 장치만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 4. 12.>

② 근로자는 이사장의 허가 없이 방호장치를 제거, 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2024. 4. 19.>

③ 근로자는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신설 2021. 8. 10.> <제18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30조(안전검사)** 공단은 법 제93조에 의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로서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신설 2021. 8. 10.> <개정 2023. 4. 12.>

**제31조(전기 안전관리)** ① 공단은 사내의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전기사고(화재, 감전 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에 정하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3. 4. 12.>

② 전기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조치는 전기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 사용한다.

③ 전기설비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1. 8. 10.>

**제32조(소방 안전관리)** ① 공단은 사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법에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정하여 관리한다.

② 소방안전 시설물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1. 8. 10.>

**제33조(시설물 등 안전관리)** ① 공단은 사내 시설물의 천재지변, 노후, 파손 등에 의한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취약요소를 정하여 항시 점검, 관리한다.

② 시설물의 주요 관리요소는 별도로 정하여 관리한다.

③ 공단은 사내 작업 등과 관련되어 관리하여야 하는 기타 안전관계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제34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보건점검을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21. 8. 10., 2025. 12. 29.>

②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서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2025. 12. 29.>

③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 전반에 대한 기계 설비별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에 관하여 안전보건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반드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2023. 4. 12., 2025. 12. 29.>

④ 모든 작업자는 작업시작 전에 일일 안전보건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2025. 12. 29.>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1. 새로운 기계·기구를 도입하여 새로운 작업방법을 실시할 때

2. 위험기계·기구를 수리 후 가동하고자 할 때

⑥ 점검방법은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제19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35조(점검결과조치)** ① 안전보건점검 후 그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정조치를 한 후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9., 2025. 12. 29.>

② 점검 결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하며, 급박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 중지 등 인원의 대피, 작업 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21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36조(작업중지)** ① 공단은 옥외작업자가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작업 시간 단축 및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② 공단은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작업의 근로자가 즉시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로부터 대피하고 관리감독자 및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2.>

1. 재해발생 위험이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2. 해당 작업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21. 8. 10.>

③ 제2항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조치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0.>

④ 모든 근로자는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제17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37조(안전기준 및 작업지침)** ① 사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의 안전기준, 소방시설 안전기준,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을 작업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 시행한다.

②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표준안전 작

업지침을 작성하여 당해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담당자 책임 하에 안전기준을 기초로 하여 과거 당해 작업장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④ 삭제 <2025. 12. 29.>

**제38조(안전수칙)**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수칙을 제정하여 사용한다.

② 안전수칙은 당해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직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24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39조(위험물질의 보관 등)** ① 위험물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당해 작업자를 위험물 취급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위험물질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당일작업에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 및 가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한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25조에서 이동 2021. 8. 10.>

## 제5장 보건 관리

**제40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

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아래 각 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1. 분진발생 옥내작업장
2. 강렬한 소음발생 작업장(보일러실, 압축실)
3. 특정 화학물질 취급 옥내 작업장
4.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② 작업환경 측정 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28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41조(건강진단의 구분)** ① 공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 대상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건강진단의 종류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으로 실시시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12.>

1. 일반건강감진

가.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나. 비사무직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2. 특수건강진단

가.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 근무 배치 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

나. 배치 후 특수건강진단: 근무 배치 후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주기

다. 정기 특수건강진단: 배치 후 검진 실시 후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주기

3.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필요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

③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 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26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42조(질병자 근로금지 등)** ① 공단은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환 <개정 2021. 8. 1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제27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43조(보호구 착용작업 등)** ① 공단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안전인증에 합격한 보호구를 지급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는 지급 받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 사용을 금한다.

③ 작업자는 개인 보호구를 항상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 할 수 있도록 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29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44조(작업복)** 공단은 근로자에게 작업복을 지급하도록 하며, 근로자는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45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공단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걱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9.>

③ 근로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사장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4. 19.>

[본조신설 2021. 8. 10.]

##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6조(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자는 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 등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재해 경위를 보고한다. 단, 관리감독자 미지정 부서에서 발생한 재해는 재해자의 부서장에게 재해 경위를 보고한다.

<개정 2021. 8. 10., 2025. 12. 29.>

② 재해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부서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사실을 육하 원칙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장에게 알린다.

<개정 2021. 8. 10., 2024. 4. 19., 2025. 12. 29.>

③ 사고 발생 부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고처리에 따른 필요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다. <신설 2021. 8. 10., 2024. 4. 19., 2025. 12. 29.>

④ 재해 발생 시 각 부서는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⑤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 조치와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제31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47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근로자는 재해발생 사실통보 후 사고 현장은 그대로 보존 하여야하며,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장의 지시 없이 휘

손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4. 4. 19.>

② 관리감독자는 사고현장에 즉시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동종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4. 19., 2025. 12. 29.>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재해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⑤ 사고 발생 부서 관리감독자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4. 19., 2025. 12. 29.>

[전문개정 2021. 8. 10.]

[제32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48조(재해분석)** ①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장은 매년 전년도 재해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 4. 19., 2025. 12. 29.>

② 산업재해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작성된 분석 및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9., 2025. 12. 29.>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 분석결과를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동종 재해방지에 주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33조에서 이동 2021. 8. 10.]

## **제7장 자율안전활동**

**제49조(안전점검의 날)** 공단은 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취약 시설의 점검을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각 사업장별로 자율 안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제50조(개선과제 제안)** ① 공단에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별표 3의 서식을 통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접수된 제안 내용은 신속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 **제8장 건설·물품·용역 계약 시의 안전관리**

**제51조(건설·물품·용역계약시의 안전관리)** 본 규정은 공단의 모든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단 사업장내 도급·위탁업체와 공단의 방문객 및 출입자에 대해 적용 및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개정 2023. 4. 12.>

**제52조(안전작업허가)** 공단의 사업장 내에서 공단이 발주하여 외부업체에 의해서 실시되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작업허가를 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2., 2025. 12. 29.>

1. 화기작업
2. 바닥에서 2m 이상의 고소작업
3. 중장비를 이용한 운반 및 굴착작업
4. 정전작업
5. 밀폐공간 작업
6. 기타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작업

[본조신설 2021. 8. 10.]

## 제9장 상벌

**제53조(포상)** ①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장은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시설별, 근로자에 대해서 수시로 표창을 상신하여 시상함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도록 한다. <개정 2024. 4. 19.>

② 포상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안전, 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 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업무 처리에 공적이 탁월한 자 [본조신설 2021. 8. 10.]

[제34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54조(징계)** ① 법이 정한 명령이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단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한다.

② 징계 대상에 다음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 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자
4. 안전교육 무단 불참자(정기안전보건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인규명을 실시한 후 징계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35조에서 이동 2021. 8. 10.]

## **제10장 보칙**

**제55조(규정 제정 및 개정 등)** ① 공단 내 모든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은 사업장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전 근로자가 알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56조(적용기준)**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37조에서 이동 2021. 8. 10.>

**부칙**<제24호, 2017.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여수시도시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93호, 2021.8.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5호, 2022.7.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5호, 2023.4.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1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5호, 2024.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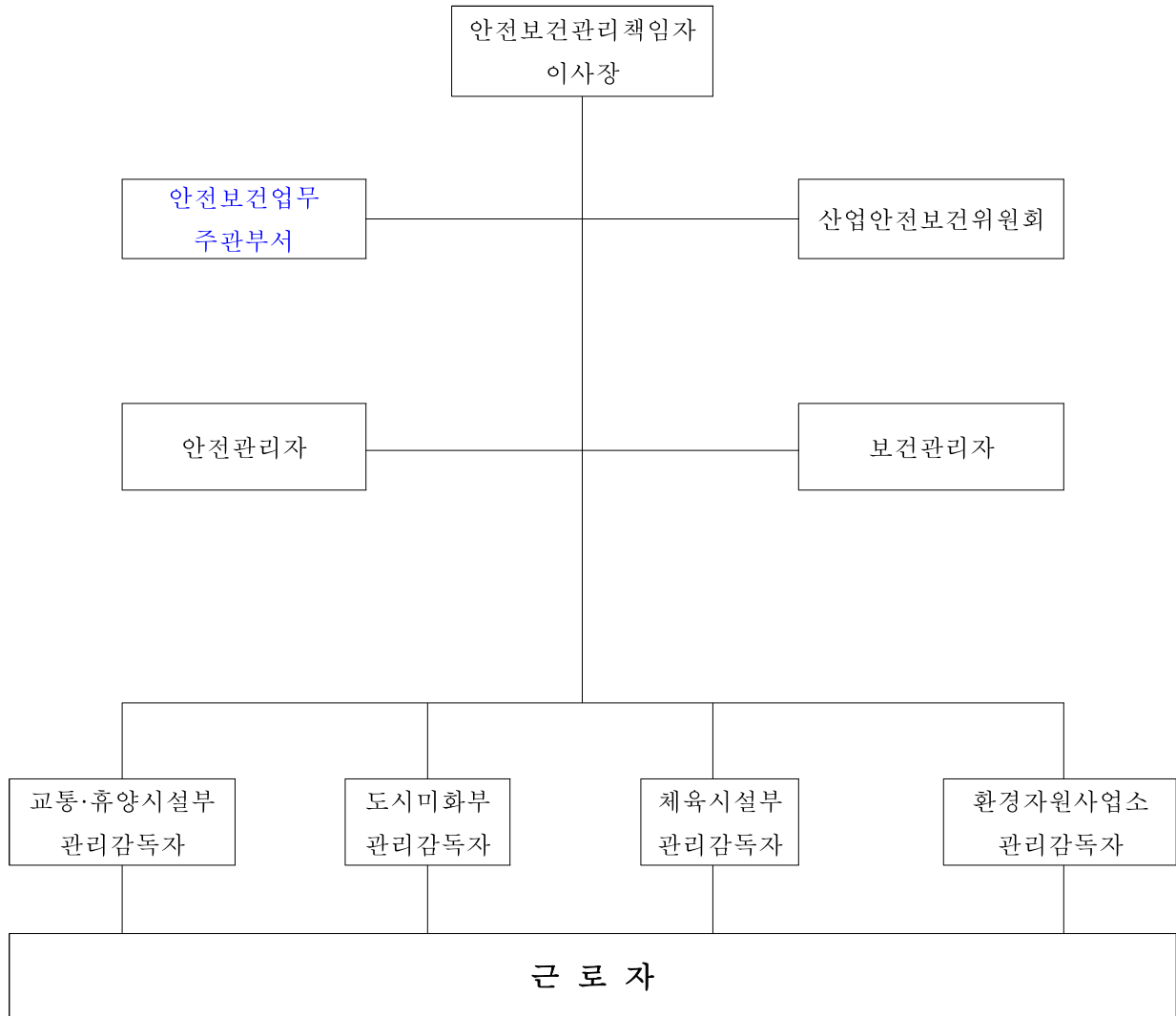
이 규정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8호, 2025. 12. 29.>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 8. 10., 2022. 7. 20., 2024. 4. 19., 2025. 12. 29.>

## 안전보건관리조직(제6조 관련)



## 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플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섬유벨트 또는 혹·샤클·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1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균열·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12.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제2편 제1장 제10절 제5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13.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14의2. 용접·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나.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다.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마.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15.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	전선 및 접속부 상태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혹이 붙어 있는 슬링·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나. 슬링·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

## 산업안전 개선과제 제안서(제50조 관련)

개선과제명			
부서명		사업장명	
개선과제의 필요성	○ ○		
개선과제의 내용	○ - -		
기대효과	○ ○		
기타	-		
제안자	소속		
	성명		
	담당직무		
	e-mail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제18조 관련)

( )년 ( )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일시	장 소		회의구분	
참석위원	사용자측 위원		근로자측 위원	
	의 장		위 원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안전관리자		위 원	
	보건관리자		위 원	
상정안건	- 회의 자료 참조			
기타사항				